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0
----------	------

발의연월일 : 2022. 1. 24.

발의의원 : 김정태 의원, 최상국 의원

1.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 1. 13. 시행)에 따른 기록표결 도입과 관련, 표결방법을 다양화하여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록표결방법의 다양화(안 제41조)
 - 표결시 “기명투표” → “기립·거수 또는 기명투표”

3. 개정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달성군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기명투표”를 “기립·거수 또는 기명투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u>기명투표</u> 에 따른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1조(표결방법) ①----- <u>기 립·거수 또는 기명투표</u> ----- ----- ----- -----.

☐ 지방자치법(시행 2022.1.13.)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